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 - 31호

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

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7일

서울지방우정청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직 급 (직 종)	시험구분	선발예정인원 (총 31명)	제1차 시험과목 (필수 3과목)
우정9급 우정서기보 (계리)	공개경쟁 채용시험	일 반 : 29명 장 애 인 : 1명 저소득층 : 1명	한국사(상용한자 포함) 우편 및 금융상식(기초영어 포함) 컴퓨터일반

※『우편 및 금융상식』학습자료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(채용정보)에 게시

▣ 모집단위(지역)별 구분모집표

(단위 : 명)

구 분	모집단위(지역)	선발인원
서울지방우정청(일 반)	서울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	24
	서울지방우정청 국제우편물류센터(인천)*	5
서울지방우정청(장애인)	서울지방우정청 관할 전 지역	1
서울지방우정청(저소득)		1

* 국제우편물류센터 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-32(운서동)

※ **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(기관)으로 전보 될 수 없습니다.**

※ 우정9급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우체국, 집중국,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. **(단, 국제우편물류센터 모집단위 합격자는 해당기관으로만 최초 임용됩니다)**

※ 계리직종의 직무내용은 우체국금융업무·회계업무·현업창구업무·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.(단, 국제우편물류센터 직무내용은 국제우편창구업무·회계업무·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와 **국제우편물 구분·발송 관련 업무**입니다)

2. 시 험 방 법

○ 제1차 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

※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: 매 과목당 100점 만점,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
- 상용한자는 한국사에,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~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
- 시험시간 : 60분 (문항당 1분 기준, 과목별 20분)

○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
3. 응 시 자 격

가. 응시결격사유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.(판단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예정일)

◦국가공무원법 제33조

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* 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 6.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.
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·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·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·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·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·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◦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

·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·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나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1998.12.31. 이전 출생자)

다. 학력·경력 : 제한 없습니다.

라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○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**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○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○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는 **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**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○ 응시대상 :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 또는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
○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보호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(보호)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보호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.(다만,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)

※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·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(보호대상자)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.(다만,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)

○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보호기간 명시) 등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수급(보호)기간이 명시된 수급자(한부모가족)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(동일세대원에 한함)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방문 전 시·군·구청 기초생활보장·한부모가족담당자(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 등)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(인사혁신처 예규, 인사혁신처 홈페이지-분야별정보-법령정보-훈령/예규/고시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

○ 응시자는 **공고일(2016. 3. 7.) 현재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**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※ 향후 채용시험이 시행될 경우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

시 험 명	접수기간	구 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자	합격자 발 표
우정9급 우정서기보 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	2016.6.7 ~ 6.11 (취소마감일 : 6.15, 21:00)	필기시험	2016. 7.13.	2016. 7.23	2016. 8.23
		면접시험	2016. 8.23.	2016. 10.8	2016. 10.12

○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se)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,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.

○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, 시험성적은 동 사이트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○ 접수방법 :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se) ‘2016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’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○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:00~21:00

○ 기　　타 : 응시수수료는 5,000원입니다.

※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: 크기 3.5cm × 4.5cm(140 × 180pixel)기준, 파일용량 100Kbyte미만, 파일형식 JPG, GIF

(원서접수 사진파일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)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○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원서접수 전에, 장애유형(시각, 청각, 지체, 뇌병변)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을 응시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
○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,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
○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○ 모집단위(지역)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(시험 볼 지역)은 아래와 같습니다

지 역 별	서울특별시(국제우편물류센터 포함)
제1차시험 응시지역(시험 볼 지역)	서 울

6. 가산 특전

가. 가산특전 비율표

구 분	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3~5%	o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o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 o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 ~ 라' 참고
자격증 소지자	공통적용 가산점 (전산직 제외)	과목별 만점의 0.5~1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

나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

○ 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,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,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3조, 『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『국가공무원법』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○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/5%/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○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,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044-202-3258)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자격증 소지자

○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)을 소지한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 분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
	1%	0.5%
9 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 2급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.

라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○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[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정보화자격증 사본 등을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**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**

○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7. 기 타 사 항

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40점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다. 본 공고문의 내용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(http://gojobs.go.kr) “채용정보/공개경쟁채용정보” 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라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또는 통지하겠습니다.

마. 2017년부터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최소인원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(☎02-6967-914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